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2월 16일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에서의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지원 대상 사업에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(안 제4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)
- 2)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2항 신설)
- 3)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 지원한도율을 규정함(안 별표 1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에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등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음.

2) 주요 내용

- 가) 지원 대상 사업에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(안 제4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)
- 나)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2항 신설)
- 다)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 지원한도율을 규정함(안 별표 1)

3) 검토 의견

-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등 상위법령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및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임.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안전 사고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생활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